

스타트업 계약서 Kit(V.2.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안내사항

- 본 계약서 양식의 개별 조항 및 안내글은 사용자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삭제/변경될 수 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 또는 표준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본 계약서(안)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기타 손해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와 모두싸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최종 계약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사업주

근로자

20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OO에 본점 사무소를 둔 주식회사 000(“사업주” 이하 “갑”)와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000(생년월일: 1900년 00월 00일)(“근로자” 이하 “을”)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경영 및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에 대한 보상, 주인의식 고취 및 동기 부여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 상호 합의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해설]

스톡옵션은 회사의 성격에 따라 부여 근거가 되는 법규가 달라지게 됩니다.

1)일반 비상장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 2)벤처기업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이, 3)그리고 상장회사인 경우 특례규정인 「상법」 제542조의3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에 따라 부여대상자의 자격, 부여한도, 부여절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서 및 정관 작성시에 이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수량 등

“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갑”이 교부할 주식의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은 별첨1과 같다.

제3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갑”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 “갑”은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법 또는 차액에 상당하는 “갑”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갑”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해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으로 (i) 스톡옵션 행사가액 납입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ii)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iii)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의 경우 그 행사가액은 부여일 기준 주식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ii)의 경우 행사가액은 부여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질가액’은 당시 주식이 거래된 시세를 활용하거나, 상증세법상의 시가를 이용하거나, 합의된 기타 방법을 이용하는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갑”이 “을”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일은 2000년 00월 00일로 한다.

[해설]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날짜이며, 계약체결일이나 스톡옵션부여의 결의일과 동일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한도

- (1) “을”이 “갑”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일 경우 아래 행사기간 내에 해당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한도
2000. 00. 00. ~ 2000. 00. 00	00주

- (2) 위 행사기간 내에 행사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은 상실된다.

[해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습니다. 단 위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된 권리의 존속기간을 사전에 정하여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 (1) “을”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량이 기

제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이하 “**신청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제1항의 신청서가 “갑”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 (3) “갑”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행방법, 일정, 납입시기 및 장소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행절차를 “을”에게 통보한다.
- (4) “을”은 제3항에 의해 통보된 절차에 따라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갑”은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주식 또는 금전을 교부한다.

[해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8).

제7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산식에 기초하여 이사회 결의로 제2조의 행사가격 또는 수량을 조정한다. 이 경우 수량 조정에서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고, 행사가격 조정에서 1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기로 하며, 행사가격 조정으로 행사가격이 액면가에 미달되는 경우 행사가격을 액면가로 하기로 한다.

1. 행사가격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조정 후 행사가격 = (유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총수 × 조정 전 행사가격 + 유상증자 발행 주식수 × 유상증자 주당 발행 가액) ÷ (유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2. 무상증자

가. 조정 후 행사가격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총수 × 조정 전 행사가격)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나. 조정 후 수량 = 조정 전 부여 수량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 총수

3.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액면 가액에 의한 유상증자로 간주하고 본 조 제1호를 적용한다.

4.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하여,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위 사채에 의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한 부분이 모두 전환 또는 행사되었다고 가정하고 본 조 제1호를 적용한다.

5. 주식 분할 또는 주식 병합

가.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분할 또는 병합 후 액면가 ÷ 분할 또는 합병 전 액면가

나. 조정 후 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 분할 또는 병합 전 액면가 ÷ 분할 또는 병합 후 액면가

6.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 상환으로 발행주식 총수 감소

가.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나. 조정 후 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7. “갭”의 합병 또는 분할

“갭”이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 계약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합병 계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이 계속 유효한 경우에는 합병 비율에 따라 행사수량 및 행사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해설]

스톡옵션 부여 후 행사 전에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요인이 발생한 경우 기존 주주나 스톡옵션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주식배당, 주식의 병합이나 소각, 합병 또는 분할 등의 경우에 행사가액을 조정한다는 조건이 희석방지조항(Anti-Dilution Provisions)에 포함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 외에 매수수량 조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학계와 실무계의 공통된 견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본 계약서상 조정사유별 계산식은 행사가격 및 매수수량 조정에 관하여 실무상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산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8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효력

“을”은 제6조에 따라 대금을 납입한 날로부터(자기 주식 교부의 경우 주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갭”의 주주가 된다. 다만 “을”이 대금을 납입한 날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

인 경우 당해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9조 주식매수선택권 양도 등의 제한

“을”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만일 주식매수선택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은 상실된다.

[해설]

스톡옵션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스톡옵션 재직기간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2항).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1) “갑”은 “을”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전에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을”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을”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하여 “갑”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2.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이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3. “갑”이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85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을”을 해임하는 경우
 4. “갑”이 파산 또는 해산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5. “을”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6. 주식매수선택권이 압류된 경우
 7. “을”이 직원으로서 “갑”의 인사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는 경우
 8.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갑”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직업 또는 영업을 겸업 또는 겸직을 한 경우
 9. “을”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하여 “갑”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
 10. 기타 본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제1항의 사유의 존부 또는 이사회회 결의의 취소 효력을 다투는 소가 제기되고 이 소송에서 “을”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택권부여를 취소한 이사회 결의는 취소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3) 상법 제385조 제2항에 의하여 “을”의 해임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거나, “을”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을”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당해 소에서 “을”을 해임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고, “을”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판결(무효, 부존재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스톡옵션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회사가 자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하여 이사회가 선택권을 취소하면 선택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계약서상 부여취소 사유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먼저 정관에 위 사유들이 스톡옵션 부여 취소 사유로 열거되어 있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상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정하여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비상장회사의 경우 이처럼 회사가 자치적으로 정한 부여 취소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학설상 제한 외에는 취소 사유의 별다른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비상장회인 벤처기업의 경우는 스톡옵션 취소 사유로 벤처기업법에서 다음 4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합병, 분할로 인한 승계

- (1) “갑”이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합병계약에 의해 합병존속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을”은 합병결의가 있

은 후 14일 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여부를 정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단, 합병이 “을”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2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갑”은 합병존속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할 것을 합병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 (2) “갑”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갑”의 영업 일부가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하고, “을”이 그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존속회사에 승계되는 경우에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의하여 그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존속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을”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일로부터 14일 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여부를 정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단, 분할이 “을”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3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갑”은 그 분할신설회사 혹은 분할합병존속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할 것을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을”은 본 계약의 존재 또는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제3자가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을”이 본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완전 합의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한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약속, 조건 또는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본 계약이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이전의 모든 합의를 대체한다.

제14조 불가항력

“갑”이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사고, 전쟁, 반란, 폭동, 기타 민란, 전염병, 격리, 천재지변, 정부조치 등 “갑”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여 이에 따라 해석되며,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갑”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이하, 서명 날인을 위한 여백입니다]

본 계약의 진정한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을”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 신청서에 본 계약서를 첨부하기로 한다.

2000. 00. 00

사업주

회사명

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1900년 00월 00일생) (서명 또는 인)

주소

별첨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수량 등

1. 발행자명 :
2. 주식종류 : 기명식 보통주
3. 1주당 행사가격 : 금 원
4. 교부수량 : 총 **주

[해설]

부여주식의 종류에 관하여 법적으로 어떤 제한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보통주 외에 다른 종류의 주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주당 행사하실 가격의 경우,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행사가격은 아래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
 -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또한 지급이 예정된 수량은 부여 당시 확정할 수도 있지만 법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특정 시점의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일반 비상장회사의 경우 총발행주식의10%, 2)벤처기업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50%, 3)상장회사의 경우 15%이내 범위에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